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법률 제18200호, 2021.6.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안 제8조제2항)

-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함

나. 정보보호 공시 의무 예외 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이행 기한 신설(안 제8조제6항)

- 정보보호 공시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현황에 대한 제출기한을 정함

라. 기타 개정사항(안 제8조제4항, 제5항, 제7항)

○ 관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 및 용어 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한한다)

2.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전년도(법인인 경우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⑥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을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를 “제1항부터 제6항에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공시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신설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정보보호 공시의 방법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가 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 현황 2.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3.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u><신 설></u>	제8조(정보보호 공시의 방법 등)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한한다)

2.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

	<u>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전년도(법인인 경우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u> <u>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u>
<u><신 설></u>	<u>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한다.</u> <u>1.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u> <u>2.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u>
<u>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시 주체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주관하여 공시하되,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최고경영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u> <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u>	<u>④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u> ----- ----- ----- ----- -----. <u>⑤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u>

공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u><신 설></u>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공시내용의 작성기준, 공시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 -----. ⑥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공시를 하려는 자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현황을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에서-----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연 락 처	(044) 202 - 6453